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구청장의 임명 및 위촉권의 제한사항을 개정하고,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임명 및 위촉권의 제한사항(안제4조제3항, 안제17조제3항)
- 나.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(안제4조제1항, 안제17조제2항)
- 다. 위원회 개의 정족수 관련 규정 개정(안제6조제2항)
- 라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(안제17조제4항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

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1조

3)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7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12. 19. ~ 2020. 1. 8.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
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반영

- 제17조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제안

입법예고문안	상 정 안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<u>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	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</u> ----- ----

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(2020.1.1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으로”를 “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한다. 다만, 부구청장, 도시환경국장,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적으로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출석으로”를 “출석(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.)으로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동위원회는”을 “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”으로, 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”를 “건축위원회(이하 “건축위원회”라 한다.)”로, “구청장이 위촉하되, 건축위원회의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건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공동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 중 “제3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<u>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<u>한다. 다만, 부구청장, 도시환경국장, 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정보통신·도시설계·경관·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<u>자</u>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 <p>제6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<u>출석으로</u>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4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.</u>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 <u>출석(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</u></p>

제10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략)

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하며,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7조(구성)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공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어야 한다.)으로 -----.

제10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구성)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및 -- 건축위원회(이하 "건축위원회"라 한다.) ----- --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건축위원회 -- -----.

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공동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심의

<p><u>제18조(임기)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2항의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.</u></p>	<p><u>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.</u> <u><삭 제></u></p>
<p>제19조(운영)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<u>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9조(운영) ----- <u>제5조</u>----- 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정비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한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의안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이 일어나지 않음

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이상희 (☎ 3153-9354)